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출년월일: 2022. 1. 6. 의안 8 - 780버호 제 출 자: 안산시장 □ 제안이유 ○ 「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」제4조(존속기한)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1.12.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「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. □ 주요내용 ○ 동 조례 폐지 ※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524호 2020.3.27.)에 지역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폐지함. □ 폐지조례안 : 붙임1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3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1. 11. 1. ~ 2021. 11. 22. (21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5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해양수산과
형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해양수산과장 이 동 욱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해양보전팀장 장 두 성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재 천 (행정2337)